

사업주가 장애인 이용 용이성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 의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Justice Department)가 운영하는 장애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홈페이지:

www.ada.gov

이 사이트에서는 소규모 사업 매장에 필요한 이용 용이성 설계 및 준수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사업장 대상으로 이용 용이성 평가를 대행해 주는 자립 생활 센터(ILC).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ILC에 관한 정보 및/또는 추천을 받으시려면 뉴욕주 전체 ILC의 포괄 기관인 NYAIL(Association Association on Independent Livin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YAIL에 연락하시려면 518-465-4650 (전화)이나

<http://www.ilny.org/index.asp>를 참조하십시오.

- 뉴욕주 인권법 장애 관련 조항의 준수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718-741-8400번으로 뉴욕주 인권 분과 장애인 권리 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뉴욕 주의회와 주지사는 뉴욕주의 장애인 이용 용이성과 관련해 광범위한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공조를 통해 이러한 기준이 장애를 가진 뉴욕인들의 권리에 호응하며 동시에 뉴욕주 내 사업 기회, 운영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충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

규정, 관행 또는 절차 개정의 예: 특정 매장의 장애인용 특별 출입구가 영업 시간 중에 잠겨 있는 경우, 해당 매장은 규정을 변경해 매장이 열려 있을 때는 해당 출입문을 개방해 두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출 박스나 단추(안내 표지를 부착해 쉽게 이용 가능한 위치 및 높이에 장착합니다)를 설치해 직원들이 와서 출입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적 장애물 제거의 예:

- 주 출입구의 계단(들) 없애기 및 램프(경사 진입로) 설치하기. 또는,
- 출입문 통로 또는 계산대로 가는 통로 넓히기. 또는,
- 서비스 카운터를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낮추기.

의사 전달 장애물 제거의 예: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TTY(텔레타이프라이터 전화기) 서비스 설치. TTY는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대신 서로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기를 사용해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치입니다.

보조 장치의 일반적인 예: 시각 장애인에게는 점자(Braille) 또는 대형 활자와 같은 대안적 형식으로 작성된 서면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 용이성을 갖춘 시설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

국세법에는 사업자가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드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장애인 이용 용이성 개선은 법에 정해진 의무 사항일 뿐 아니라, 세금 혜택과 더불어 장애인을 포함한 고객층 확대를 통한 "수익 증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BLIGATIONS OF BUSINESS OWNERS
AND OPERATORS
of Places of Public Accommodation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

공공 편의
시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ANDREW M. CUOMO, GOVERNOR

ONE FORDHAM PLAZA
BRONX, NEW YORK 10458
(718) 741-8400

WWW.DHR.NY.GOV

공공 편의 시설 사업 소유주 및 운영자의 의무

뉴욕주 인권법은 공공 편의 시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법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발휘를 막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유전적 또는 신경학적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의료적 결함. 또는,
-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진단 기법을 통해 입증 가능한 상태. 또는,
- 그러한 결함의 기록. 또는,
-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결함으로 간주되는 상태.

뉴욕주 "공공 편의 시설"의 예로는 **각종 호텔, 레스토랑, 소매 매장, 의료 클리닉, 병원, 놀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공원,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금지 대상 차별 행동

공공 편의 시설은 장애를 이유로 개인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규정 또는 절차의 합리적인 변경

공공 편의 시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해당 공공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경우, 규정, 관행 또는 절차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공공 편의 시설은 해당 개정을 실시할 경우 시설의 사업 또는 시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규정, 관행 또는 절차의 개정을 반드시 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 대상 개정이 사업 또는 시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공공 편의 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있습니다.

보조 장치를 제공할 의무

보조 장치 또는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공공 편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조 장치"의 예: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유자격 수화 통역사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대형 활자 자료
- 기타 각 상황에 적합한 보조 장치.

그러한 보조 장치의 제공이 사업 또는 시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공공 편의 시설은 해당 보조 장치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된 개정 사항이 사업 또는 시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공공 편의 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

"과도한 부담"은 상당한 어려움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특정 조치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요청된 개정사항의 성격 및 비용을 해당 공공 편의 시설이 가진 자원과 대비해 평가합니다.

구조적 장애물의 제거

공공 편의 시설은 제거가 "즉시 용이한" 경우, 기존 시설에서 구조적 장애물 및 성격상 구조적인 의사 전달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해당 법은 "즉시 용이한"이라는 말을, 손쉽게 달성 가능하며 그다지 큰 어려움이나 비용 없이 실행 가능한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려 대상 요인으로 비용, 재정적 자원 및 대상 공공 편의 시설의 유형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제거는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며, 공공 편의 시설은 자원이 생기는 대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물 제거가 손쉽게 달성 가능치 않은 경우, 공공 편의 시설은 반드시 대안적 방법을 사용해 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의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다른 장소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